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단128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판사 신종화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나. 피고와 소외 B, C, D은 망인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합니다)와 소외 F의 자녀들인데, 2021. 7. 20.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와, B, C, D, F(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합니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2.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B은 2010. 1. 12.부터 2013. 3. 15.까지 'G'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며, 'G'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총 338,544,94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명세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원고의 B에 대한 위 338,544,940원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lt;표1&gt;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2022. 6. 29. 기준)

(단위: 원)

| 순번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br>성립일 | 채납액        | 본세         | 가산금        |
|----|-------|---------|-------------|------------|------------|------------|
| 1  | 부가가치세 | 2010.2기 | 2011.01.25. | 16,801,710 | 9,493,790  | 7,307,920  |
| 2  | 부가가치세 | 2011.1기 | 2011.04.25. | 20,310,180 | 11,235,180 | 9,075,000  |
| 3  | 종합소득세 | 2010년   | 2011.05.28. | 5,179,030  | 2,959,650  | 2,219,380  |
| 4  | 부가가치세 | 2011.1기 | 2011.07.24. | 34,370,480 | 19,640,470 | 14,730,010 |
| 5  | 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1.10.25. | 27,558,640 | 15,748,000 | 11,810,640 |
| 6  | 종합소득세 | 2011년   | 2011.11.30. | 2,589,210  | 1,479,820  | 1,109,390  |

|     |       |         |             |             |             |             |
|-----|-------|---------|-------------|-------------|-------------|-------------|
| 7   | 부가가치세 | 2011.2기 | 2012.01.27. | 4,923,450   | 2,813,450   | 2,110,000   |
| 8   | 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04.25. | 16,209,890  | 9,263,000   | 6,946,890   |
| 9   | 종합소득세 | 2011년   | 2012.05.31. | 14,327,210  | 8,187,200   | 6,140,010   |
| 10  | 부가가치세 | 2012.1기 | 2012.07.25. | 42,898,340  | 24,513,340  | 18,385,000  |
| 11  | 부가가치세 | 2012.2기 | 2012.10.25. | 29,292,770  | 16,739,000  | 12,553,770  |
| 12  | 종합소득세 | 2012년   | 2012.11.30. | 8,458,510   | 4,833,510   | 3,625,000   |
| 13  | 종합소득세 | 2011년   | 2013.01.03. | 8,875,850   | 5,072,090   | 3,803,760   |
| 14  | 부가가치세 | 2012.2기 | 2013.01.25. | 14,347,340  | 8,198,590   | 6,148,750   |
| 15  | 부가가치세 | 2013.1기 | 2013.04.25. | 47,456,140  | 27,118,000  | 20,338,140  |
| 16  | 종합소득세 | 2012년   | 2013.05.31. | 44,946,190  | 25,683,680  | 19,262,510  |
| 합 계 |       |         |             | 338,544,940 | 192,978,770 | 145,566,170 |

### 3.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성립되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바, 2010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위 <표1> 기재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B의 사해행위는 2021. 12.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

위일 이전에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망인의 사망으로 2021. 7. 20.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11지분 감정평가액 53,664,000원<sup>1)</sup> 상당의 법정상속분(이하 '이 사건 상속분'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게 되

1) 2021. 12. 30.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 상속지분 = 295,152,000원 × 2/11

었습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제6호증 갑 정평가서)

그런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12. 21. B이 이 사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합니다, 갑 제5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약정을 체결한 후 2021.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7/11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2/11지분은 C의 소유로, 나머지 2/11지분은 D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채무초과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1. 12. 21. 당시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만 338,540,940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상속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아래 <표2>의 기재 참조, 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7호증 재산현황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됨은 명백합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H의 재산내역(2021. 12. 21.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종 류  | 내 용       | 가 액           | 증 거            |
|---------------|------|-----------|---------------|----------------|
| ①<br>적극<br>재산 |      |           | 0원            | 재산현황표(갑 제7호증)  |
| 합 계           |      |           | 0원            |                |
| ②<br>소극<br>재산 | 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채권 | 338,544,940원  | 채납유무조회(갑 제1호증) |
| 합 계           |      |           | 338,544,940원  |                |
| 채무초과액(①-②)    |      |           | △338,544,940원 |                |

#### 라. 사해의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의 조세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사해행위의 수익자이자 B과 공동 상속인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 내지 추정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써 이 사건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원상회복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상속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6. 제소기간

사해행위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21. 12.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민법 제406조 제2항<sup>2)</sup>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7.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규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한 손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분에 해당하는 2/11지분을 한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1 전 2,288㎡ 끝.

